



경기도의회 제393회(임시회)

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

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

■ 경기도지사 제출 제87번

2026. 9. 7.(월)

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창희

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

1. 요구이유

- 2027년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4항」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무

- 1)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- 2) 청소년안전망 구축
- 3)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
- 4)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사업

나.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1) 근거 :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 제9조,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, 「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7조
- 2) 필요성 : 청소년 상담·긴급구조·자립·의료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·복지 분야의 지식과 경험, 경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

다. 위탁사무 내용

1) 사무 내용

- 청소년과 부모(보호자)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- 청소년지도자와 상담·지원인력의 양성과 교육·연수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운영
- 위기청소년 청소년의 일시보호·의료·법률·생활 등 긴급지원
-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과 심리적 외상 지원

-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
-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
-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·보급
- 시·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·지원 업무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
- 그 외 청소년 상담지원 관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

라. 소요예산 : 2,225,156천원(국 384,822, 도 1,840,334) * 2027년 기준

- 1)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: 988,028천원(도비)
- 2) 청소년안전망 구축 : 1,077,154천원(국304,835 도772,319)
- 3)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: 37,158천원(국18,579 도18,579)
- 4)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: 122,816천원(국61,408 도61,408)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 설 명 :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* 1993. 4. 1. 개소
- 2) 기 능 : 청소년 상담·긴급구조·자립·의료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, 시군센터(31개소)에 대한 관리·지원 등 광역기능 수행
- 3) 소 재 지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, 1~2층
- 4) 조직 및 인력 : 7개 팀 총 37명(센터장 1, 팀장 7, 팀원 29)

바. 위탁예정 기간 : '27.01.01. ~ '29.12.31.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부서자체 검토결과
 - 청소년 상담·긴급구조·자립·의료지원 등 청소년 통합 복지 지원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을 통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
 - 전문인력 및 청소년안전망 등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 - 민간의 전문지식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통해 사업 능률성 제고

※ 2026년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(기획담당관-8740(2026.8.3.)호) : 적정

3. 검토의견

■ 동의안 제출취지

-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이자,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에 현재 그 역할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.

《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개요 》

- ▶ 운영법인 : (재)대건청소년회
- ▶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 (2년)
- ▶ 소재지 :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(송죽동)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 1-2층
- ▶ 인 력 : 37명 (센터장 1, 팀장 7, 팀원 29) / 센터장 - 정민선
- ▶ 시설규모 : 621.8㎡(사무실, 강의실, 회의실 등)

-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,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 제4항¹⁾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,
- 위탁기간은 3년(2027. 1. 1. ~ 2029. 12. 31.)이며, 소요예산은 약 22억 원이며,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.
- 본 동의안은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.

1)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(도의회 동의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■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, 「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제6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,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「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센터의 설치)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소년이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을 따른다.

제6조(운영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·제23조를 따른다.

③ 도지사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○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은 조례 제4조²⁾에 따라 △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△청소년전화 1388 운영 △시·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허브기능,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연수 △위기청소년 지원사업,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△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, 이는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'에 해당하여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³⁾의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함.

2) 「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
2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
3. 청소년전화 1388 운영
4. 시·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허브기능
5. 시·군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연수
6.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
7.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
8.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
9.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의 기준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■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(지속필요성) 검토

-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3년 4월 1일 개소 이래로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, 관련 지식과 경험, 경력 등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직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고 사업 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증대 등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,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 해당 사업은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 제3항⁴⁾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으로서 위탁 진행에 있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협약서 제출, 고용유지·승계 및 고용기간, 노동조건 보호 등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야 할 것임.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

4)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,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